

경운대학교 보건실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및 후생을 위해 설치된 보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보건실은 교학처 산하에 둔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3조(업무) 보건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응급 간이치료와 구급약품 투여
2. 건강상담
3. 진료기관 안내
4. 학생의 신체검사
5. 교내 환경위생
6. 기타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실장) ① 보건실에는 실장 1명을 둔다.

② 실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③ 실장은 보건실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보건실에는 진료의사와 약사, 간호사, 임상 병리사 등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